

## ■ 대학원 학칙

시행 : 2021.03.01.

제33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36조(논문심사)

-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 ■ 대학원 시행세칙

시행 : 2020.09.01.

제27조(논문심사의 결정)

-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대학원 내규

시행 : 2021.03.01.

제5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본 내규 제6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

제57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8조(논문심사의 합격 등)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
-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논문심사위원회)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본 내규 제72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④ 논문심사위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0조(논문심사위원 위촉)

-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이 최소 2명 포함되어야 하며, 1명 이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가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또는 본교 동일전공분야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학과,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2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1조(학위청구논문의 대체) 석사학위과정의 청구논문은 소정 과목 6학점 이상 추가 취득, 졸업작품 제출, 졸업시험 합격, 인턴십 보고서 제출, 국내·외 저명 학술지 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 ①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신청, 게재 또는 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내규를 따르고, 학위청구논문대학과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시행세칙 졸업요건에 따른다.
- ④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한의학계열의 의사학, 원전학 전공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게재 완료 후 30일 이내 해당 논문 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반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제2항, 제3항과 학과 내규를 따른다.
- ⑥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제3항 내지 제4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입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 ⑧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본교 또는 본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